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경안2지구 도시개발구역 A1블럭)
오피스텔 분양광고

청약Home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551-3935) 및 공식 홈페이지(http://해링턴스퀘어리버파크.com)**등을 통해 분양광고 및 청약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문의전화 폭주로 인하여 상담전화 연결이 안될 경우가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등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에 따른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2025.06.27) 기준입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경기도 광주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써 거주자 우선 분양은 적용 받지 않습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오피스텔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의 공급지역은 **경기도 광주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 3 제2항에 의거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됨.**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4제2호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 본 오피스텔은 900%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 현황은 **사업주체 홈페이지(http://해링턴스퀘어리버파크.com)**를 통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계약자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오피스텔 공급계약서는「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총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연대 균등 각각 50% 납부)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c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시	**2025.07.02.(수)**	**2025.07.07.(월) 16:00 이후**	**2025.07.12(토) 10:00~17:00**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계약**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 견본주택 : 경기도 광주시 역동 28-58번지**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오피스텔	O		O				

* 단, 정확한 본인인증을 위하여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광주시청**[주택과-제28918호(2025.06.23.) 분양신고 필]**

■ **공급위치 : 경기도 광주시 역동 28-3번지 일원**

■ **분양사업자 : 경안리버시티개발 주식회사 / 시공사 :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 분양대행사 : 주식회사 밀리언키홀딩스**

■ **분양보증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분양대금 관리자 : 한국자산신탁(주)**

-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 분양사업자 경안리버시티개발 주식회사와 자금관리자 관계**

■ **공급규모 : 지하 5층, 지상 39층 총 4개동 중 오피스텔 (104동) 72실(별도 분양예정 : 아파트 총 818세대 중 일반분양 817세대)**

- **건축물 연면적 : 175,441.1035㎡ 중 오피스텔 13,117.3762㎡**
- **사업 대지면적 : 16,851.00㎡ 중 오피스텔 1,259.9152㎡**
- **주차대수 : 총 1,352대 중 오피스텔 92대**
- **본 건축물은 주상복합단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이 복합되어 계획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본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호 "업무시설"에 해당 함.

■ **입주예정일 : 2029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준공 및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단축(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암반, 문화재 발견, 정부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오피스텔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함.

내진등급	내진능력(MMI 등급)
내진Ⅰ등급	Ⅶ-0.218g

■ **건축물 층별 용도**

구분	용도
지하5층 ~ 지하1층	지하주차장(오피스텔은 지하1층 주차장만 이용 가능)
지상1층 ~ 지상2층	오피스텔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지상3층 ~ 지상39층	오피스텔

■ **공급대상**

[단위 : ㎡, 실]

구분	타입	총 호실수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부속용도 기전실/기타	주차장	소계		
				벽체공용	공용부						
오피스텔	OT84	72	84.9875	8.4970	29.3101	122.7946	13.7676	45.6236	59.3912	182.1858	17.4988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실]

타입	공급 호실수	해당동 (라인)	층별	해당 호실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50%)					잔금(4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입주지정일
									계약금	계약후 30일 이내	2026.01.12	2026.08.10	2027.03.10	2027.11.10	2028.06.12	
OT84	36	104동 7호	3층	1	223,533,000	219,970,000	21,997,000	465,500,000	10,000,000	36,550,000	46,550,000	46,550,000	46,550,000	46,550,000	46,550,000	186,200,000
			4층	1	228,479,000	224,837,000	22,484,000	475,800,000	10,000,000	37,580,000	47,580,000	47,580,000	47,580,000	47,580,000	47,580,000	190,320,000
			5층	1	233,473,000	229,752,000	22,975,000	486,200,000	10,000,000	38,620,000	48,620,000	48,620,000	48,620,000	48,620,000	48,620,000	194,480,000
			6~10층	5	238,419,000	234,619,000	23,462,000	496,500,000	10,000,000	39,650,000	49,650,000	49,650,000	49,650,000	49,650,000	49,650,000	198,600,000
			11~20층	9	243,413,000	239,534,000	23,953,000	506,900,000	10,000,000	40,690,000	50,690,000	50,690,000	50,690,000	50,690,000	50,690,000	202,760,000
			21~30층	10	248,359,000	244,401,000	24,440,000	517,200,000	10,000,000	41,720,000	51,720,000	51,720,000	51,720,000	51,720,000	51,720,000	206,880,000
			31~39층	9	250,856,000	246,858,000	24,686,000	522,400,000	10,000,000	42,240,000	52,240,000	52,240,000	52,240,000	52,240,000	52,240,000	208,960,000
	36	104동 8호	3층	1	219,067,000	215,575,000	21,558,000	456,200,000	10,000,000	35,620,000	45,620,000	45,620,000	45,620,000	45,620,000	45,620,000	182,480,000
			4층	1	223,917,000	220,348,000	22,035,000	466,300,000	10,000,000	36,630,000	46,630,000	46,630,000	46,630,000	46,630,000	46,630,000	186,520,000
			5층	1	228,815,000	225,168,000	22,517,000	476,500,000	10,000,000	37,650,000	47,650,000	47,650,000	47,650,000	47,650,000	47,650,000	190,600,000
			6~10층	5	233,665,000	229,941,000	22,994,000	486,600,000	10,000,000	38,660,000	48,660,000	48,660,000	48,660,000	48,660,000	48,660,000	194,640,000
			11~20층	9	238,515,000	234,714,000	23,471,000	496,700,000	10,000,000	39,670,000	49,670,000	49,670,000	49,670,000	49,670,000	49,670,000	198,680,000
			21~30층	10	243,413,000	239,534,000	23,953,000	506,900,000	10,000,000	40,690,000	50,690,000	50,690,000	50,690,000	50,690,000	50,690,000	202,760,000
			31~39층	9	245,814,000	241,896,000	24,190,000	511,900,000	10,000,000	41,190,000	51,190,000	51,190,000	51,190,000	51,190,000	51,190,000	204,760,000

■ **공통사항**

- 총 분양대금은 타입, 층, 향, 구조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공히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면적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등 공용면적과 주차장, 관리실, 전기/기계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라 설치된 발코니 면적은 서비스 면적이므로 오피스텔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각 실별 대지지분은 계약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면적 확정에 대하여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소유권 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으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함. 단, 연체료가 발생할 경우 중도금보다 선순위로 변제합니다.
-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함. 단, 임시 또는 동별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나머지 잔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미납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 됩니다.
-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당 사업지는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등 복합용도로 사업계획승인를 득하였고,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은 입주자와 대지, 건축물, 조경, 공지, 건축·기계·전기·설비 등을 공유함에 따라 생활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전 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사업부지[지상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견본주택은 OT84타입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하며, '부동산거래신고'는 사업주체에서 신고할 예정으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체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금액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2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최초 분양광고일(2025.06.27.)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의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역 및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은 1인 1실(건)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900%의 예비당첨자를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격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일 시	2025.07.02.(수)	2025.07.07.(월) 16:00 이후	2025.07.12(토) 10:00~17:00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한 타입을 무작위 결정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계약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 견본주택 : 경기도 광주시 역동 28-58번지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통장 취급은행의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청약신청 안내

구 분	내 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타입	청약신청금	내 용
OT84	**1,000,000원** (금일백만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청약통장 취급은행 전 지점)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4">일반</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국내거고신고증), 외국인(외국인등록증)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사업주체에서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본인 발급용에 한함. 용도 : 오피스텔 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td></tr>
</table>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법인 신청 시	•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 법인 명의)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5.06.2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청약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사업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사업주체에게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의 층수, 향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5.06.2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동·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 900%를 무작위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 발표 장소
2025.07.07.(월) 16:00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당첨조회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당첨조회 메뉴에서 조회일 기준 최근 5일 이내 당첨자 발표한 단지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당첨자 선정 및 동.호실 결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타입 내에서 동·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사항	• 900%의 예비당첨자를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 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예비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방법

■ **계약체결 일정**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5년 07월 12일(토)	**10:00 ~ 17:00**	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 견본주택 (경기도 광주시 역동 28-58번지)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 본 오피스텔은 900%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 선정결과는 한국부동산 청약홈Home(www.applyhome.co.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해링턴스퀘어리버파크.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신한은행**	**140-015-270689**	**한국자산신탁(주)**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4동 1007호 계약자 → '1041007홍길동' / 104동 307호 계약자 → '104307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정당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효력이 상실, 해약 조치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 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 모바일 신분증 불가)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체결 신청서(견본주택 비치) - 계약금 무통장입금증 - 계약자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본인발급용에 한함,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계약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발급용도(직접작성): 서류제출 및 계약 / 제출처: 효성중공업건설(주)] - 계약자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사본 1부 - 계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인지세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발급 후 사본 제출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계약자 부담액 : 10억원 이하 7만5천원**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1/2씩 균등 부담) ・수입인지 구입처 1.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2.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법인 계약 시 (※ 모바일 신분증 불가)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체결 신청서(견본주택 비치) - 계약금 무통장입금증 - 법인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 법인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사본 1부 -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지참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인지세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발급 후 사본 제출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계약자 부담액 : 10억원 이하 7만5천원**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1/2씩 균등 부담) • 수입인지 구입처 1.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2.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제3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포함) 추가 제출 서류 (※ 모바일 신분증 불가)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 사항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당사 견본주택 비치) - 계약자 인감증명서 1부**(본인발급용에 한함, 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서류제출 및 계약 / 제출처: 효성중공업건설(주)] -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사본 1부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및 도장 -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사본 1부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5.06.27)**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자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에 의한 당첨 건의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음.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였더라도 공급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신청 시 제출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 및 고발조치 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변의 건물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오피스텔 배치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해당 도면의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 전 사업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사업주체에게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업장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 출입구,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호수 및 면적, 분양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며 당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분양안내, 유의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계약자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오피스텔 공급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총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연대 균등 각각 50% 납부)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c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관리비 및 부대시설 운영비, 기타 서비스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10% 완납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시 본 오피스텔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최대 5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 본인의 개인정인 사정으로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호실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법인은 중도금대출이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가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오피스텔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등에 대한 공급대금 및 연체료 등을 완납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증 발급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최초 신청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금리 등의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중도금 대출금리 조건(대출금리 인상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주체인 경안리버시티개발 주식회사로서 시행사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과 의무는 경안리버시티개발 주식회사에게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호실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계획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분양광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택법」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 약관에 따르며, 본 분양광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의 공급지역은 **경기도 광주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 3 제2항에 의거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됨.**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4제2호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매제한 내용을 확인한 후 법률위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본인의 책임하에 권리·의무승계를 하여야 하며, 사업관계자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사업관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승계는 무효로 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에 관하여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 3 규정을 따릅니다.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전매에 관해서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우선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분양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전에 본 분양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권리의무의 양도, 양수에 따른 비용은 양도, 양수인이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며, 매수인(점유자를 포함)은 "수분양자"의 사업주체에 대한 계약 및 분양 계약과정에서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단, 공급대금의 연체가 있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등이 복합 계획된 건축물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은 동시에 건축허가를 득한 동일 단지 내 건축물이므로 본 단지의 근린생활시설 계약자가 본 오피스텔을 추가로 계약할 경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제2항이 적용되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이의 전매를 알선한 경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합니다. 전매 가능일은 추후 사업주체에서 공지 예정입니다.
-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 및 그 책임은 "수분양자"가 책임집니다.
- 본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는 사업주체의 사전승인 및 요청하는 서류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배석하여 기명날인한 후 양도, 이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시 인지세는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인지세등 그 책임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책임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물건 취득 인정 시(공급대금의 90% 이상 납부한 경우) 권리양도(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1개월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통지는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하고 입주자 사전점검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점검은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9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준공 및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단축(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암반, 문화재 발견, 정부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각 호실에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에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 납부 영수증,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 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은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건설산업기본법」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추가 선택품목 계약 ※추가 선택품목 일부는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선택 가능한 품목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은 전실(거실+주방+실1+실2+실3)에 무상 제공됩니다.

① 가전제품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약식표기(타입)	설치품목	제조사명	모델번호	공급금액	비고
주방	OT84	빌트인 냉장고(냉장/냉동/김치냉장고) +냉장고장	삼성	RR40C78(9)95AP+RZ34C78(9)65AP+ RQ34C78(9)45AP	6,050,000	냉장고 패널 : 메탈 냉장고장 포함
		식기세척기	삼성	DW80F71Y1SEW	1,100,000	
		렌지후드(독립형)	힘펠	RHD1-C350SL_IE	550,000	
		인덕션(3구)	쿠쿠전자	CIRS-FL301FB-S	220,000	
욕실	OT84	복합환풍기(다기능 복합건조기)	그렉스	BD-150A(3S)	770,000	욕실1+욕실2 총2개소 설치

- 주방 냉장고장 옵션 선택에 따라 수납장의 구성이 변경되며, 형태 및 규격은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패키지는 문열림 방향은 견본주택 기준으로 설치되며, 임의로 선택 하실 수 없습니다.
- 식기세척기 미선택시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 별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 가전제품 별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상부장은 용량에 따라 가전제품 배치가 불가할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② 현관중문

[단위 : 원 / VAT포함]

구분	설치품목	약식표기(타입)	공급금액	비고
현관중문	현관 수동 중문	OT84	1,210,000	3연동
	현관 자동 중문		2,200,000	

• 현관중문은 장식성 도어로 차음,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중문과 가구 및 벽채, 문짝과 문짝 사이에 이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평면 형태에 따라 중문 형태 및 크기가 상이하며 본공사시 프레임 및 창호 부속물 등의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가구 및 마감재

[단위 : 원 / VAT포함]

구분	설치품목	약식표기 (타입)	공급금액	비고
바닥	광폭강마루 (W : 165)	OT84	330,000	전실 광폭 강마루 적용(실 전체 / 거실 / 주방)
조명 업그레이드	주방 특화등 + 감성조명	OT84	6,270,000	주방 특화등 (주방 레일등, 식탁 펜던트 조명) + 감성조명 (거실 우물천정 간접등, 거실 매입등, 실1 직부등)
복도마감 업그레이드	히든도어 + 복도 마감 업그레이드 +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OT84	11,000,000	
붙박이장	여닫이 붙박이장	OT84	1,100,000	실3
드레스룸 업그레이드	벽판넬 시스템 선반 + 벽판넬 파우더장 + 드레스룸 슬라이딩도어	OT84	2,860,000	
주방 업그레이드	유리상부장 + 주방 고급 싱크볼 + 미드웨이 액세서리 + 상판, 벽 세라믹타일 + 주방 고급수전	OT84	9,570,000	
	아일랜드 식탁	OT84	1,210,000	

④ 욕실특화

[단위 : 원 / VAT포함]

구분	설치품목	약식표기 (타입)	공급금액	비고
욕실 업그레이드	600*600 벽타일 + 고급 수전류 (세면대 수전, 욕조 수전, 샤워 수전) + 고급 세면대 + 비데일체형양변기 (부부,공용)	OT84	5,390,000	수전류, 양변기, 세면대 : 아메리칸스탠다드

⑤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704-790368**	**효성중공업(주)**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대금은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4동 1007호 계약자 → '1041007홍길동' / 104동 307호 계약자 → '104307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유의사항 및 부지여건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구분	내용
일반사항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 부분, 분양 안내서 등 각종 인쇄물 및 CG(조감도, 투시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A1블럭 주상복합건설사업으로 향후 개발계획 변경(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기여) 등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진행 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본 사업의 공급금액의 변동은 없으며,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인허가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사항이 아닙니다. • 실시공시 입면 디자인(저층부 마감, 알루미늄 창호 상세 및 컬러 도장 디자인 포함), 주출입구, 조경, 색채, 창호, 옥탑 장식물, 필로티,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 및 마감 사양, 동선체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자재의 품귀, 품절,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 시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의 공사 중 민원,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확인하기 바라며, 이에 따른 입주 지연 보상 금액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착공 후 현장에서의 여건이나 지반 현황 등의 상황에 따라 구조, 성능, 상품 개선을 위해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사전 분양홍보자료 및 각종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주변환경 및 개발계획의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 분양홍보자료,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견본주택내 사인물 등에 표현된 계획도로, 공원, 녹지, 공공보행통로 등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시설 등은 향후 정비계획 변경, 각종 심의, 실시계획인가 등의 인허가 결과, 현장 여건, 설계변경 등으로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세부계획(건물의 형태 및 배치, 출입구 및 통행로, 식재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등)과 견본주택의 사인물,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홈페이지, 기타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호실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현장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정리 완료에 따른 대지경계 및 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함을 확인, 수인하고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 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조, 통풍, 채광, 조망권은 층별, 호실별로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경관조명이 설치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오피스텔 입주자(입점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일부 실은 경관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 외관(지붕, 옥탑, 색채, 외장재료, 측면디자인, 창호 형태 및 색채 등), 오피스텔 단지명 사인물, 동 현관·난간의 디테일, DA(Dry Area)등 외부 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커뮤니티 및 각종 공용공간은 구조, 성능, 사용성 개선,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 없이 경미한 설계변경을 진행 할 수 있고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사업지 주변 여건에 따라 항공기 및 도로, 교통 등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인하여야 하고, 사전에 사업 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 환경,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 후 계약 체결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 배치 특성상 시각적 간섭, 소음, 바람, 일조권 간섭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외부 조명 및 공용부 조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입주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용도별로 별도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설치된 부분(공용부분의 상하수도, 전기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외부창호는 향후 풍압, 풍동 등의 구조 시험, 추후 본 공사 협력 시공업체 선정 결과 및 입주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재질, 사양 및 디자인을 포함한 제반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내·외부 창호의 개폐 방향, 색상, 두께, 사이즈, 프레임 위치 및 제품 사양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실별, 층별, 위치별로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19층 거실창호 일부는 소방대 진입이 가능하도록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구간 창이 열지지 않으며, 본공사시 창호 크기 및 위치, 분할 등 세부계획은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승강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승강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지상에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일부 호실에서는 보일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등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되고 이는 입주자 부담임을 인지 바랍니다. • 단지 내 구조물의 안전성을 위해 지하수가 유입됨에 따라 이를 단지외로 배수하는 비용이 발생되고 이는 입주자 부담임을 인지 바랍니다.
견본주택	• 견본주택은 오피스텔 OT84타입이 설치되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타입이라도 견본주택에서 확인한 평면과 좌우 대칭 호실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호실의 단위호실 평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실의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 에어컨, 점검구 등은 실제 시공 시 각 타입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l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 공사 시 KS조도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 실내 통합 분전반 설치 및 선반의 배치는 좌우 실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으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가구 소품,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 및 분양 품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향후 미설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레벨, 포장, 시설물, 드라이에어리어(DA)등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광역 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조경도, 단지 모형, 단위 실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사업계획승인 도서 및 실제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이후 일정기간 동안 공개 후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전한 뒤 회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용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분양사업자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홈네트워크 설비, 화재감지기 등은 실시공 시 디자인, 기능, 제품사양, 수량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홈네트워크 설비는 생산업체 부도,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동등 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위생도기, 수전류(발코니수전 포함), 악세사리, 환기디퓨져, 시스템에어컨, 환기유니트, 바닥배수구, 선홈통(우수관), 온도조절기의 제품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환기디퓨져 및 호실 내 스피커는 본 공사시 도서 기준으로 설치되오나 시공 중 일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시공하지 않는 단지 이외의 시설은 모형에 정확히 표현할 수 없으며, 단지 내 실외기, DA 등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공 중 일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및 부지여건	• 본 사업은 일반상업지역 내에 건설되는 주상복합건축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각 동은 공동주택 인동거리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동 배치에 따라 일부 호실은 일조가 확보되지 않을 수 있고, 사생활 침해를 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동별, 호실별 공급금액을 차등하여 공급하였으니 이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소송이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동측에는 경안천이 위치하고 있으며, 경안천의 최대홍수위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하였지만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단지가 침수될 수도 있으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단지 내부에 단지를 가로지르는 공개공지가 조성되며, 공개공지는 인근 주민 등 불특정 다수가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므로 입주민들이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해 사업주체 및 관할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주변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 세대 및 호실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단지주변의 도로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상 상위계획 및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도로폭, 경사도, 레벨 계획, 바닥마감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주민공동(커뮤니티)시설의 공동이용에 관련된 사항은 입주자들께서 직접 협의·조율하여야 하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풍압 및 풍량으로 인한 소음이 다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급·배기구, 쓰레기 집하장, 실외기 등으로 인해 냄새, 매연, 진동,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유시설 및 부지는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입주자와 공동 지분으로 하며 개별실 소유권과 지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공개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주자 임의로 휀스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유지 및 관리에 발생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 시설물은 현장의 실제 여건상 규모,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지 내 각종 인입(상, 하, 오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계획은 인·허가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붕 층에는 냉방용 설비 및 제연 시설을 위한 팬, 소화수조, 소방펌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부대시설, 공개공지, 조경시설, 재활용품 보관함, 드라이에어리어(DA) 등에 인접한 호실은 소음, 해충, 진동, 냄새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 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 수인하고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실 내·외부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 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수인해야 합니다.
- 주차대수

구분		주차대수
주거시설	공동주택	1,139 대
비주거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92 대
	판매시설	74 대
	근린생활시설	47 대
주차대수 총합		**1,352 대**

※ 상기 주차대수는 공사여건 및 동선, 기능, 성능개선 등의 사유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1층은 ①오피스텔 주차장과 ②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구간이 나누어 계획되어 있으며, 아파트 주차장은 지하 2~5층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1층 주차장에 생활폐기물 보관소와 무인택배함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서비스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습니다.
- 지하 1층 주차장은 주차장 내 택배차량 이동 등을 고려하여 유효높이 2.7m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 2~5층 주차장은 2.3m 이상으로 계획되어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 1층의 ①오피스텔 주차장과 ②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주차차단기를 통해 구분되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주차장에 설치(급속 3대, 완속 2대 - 오피스텔용)될 예정이며, 여건,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충전설비 설치 위치는 추후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전기차 충전설비 위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오피스텔 입주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동측 102동 하부에 있습니다.
-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 및 호실 별로 주차 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면적 증감, 주차대수 변경 및 위치이동 등을 포함)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주차장은 지하층에 배치되며 지하층 주차장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빗물저류조, 소화수조, 발전기실,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주거, 비주거 포함)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냄새,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바닥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해당 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 되고 일부 벽면 및 기둥에는 소화전 및 분전반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주차 차단기는 차량번호 인식등 자립형으로 설치되며 위치 등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부지 내 팬룸 및 D.A에 의한 소음, 풍압 등에 대하여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물 외관에 브랜드용 광고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로비, 승강기 홀, 복도 등 공용공간은 추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호실이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1,2층 및 지상1층 일부 영역에 주차장 및 기계실, 전기실 등을 위한 급·배기구와 화재 시 작동하는 제연설비의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지붕 층에 각종 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인접한 세대 및 호실은 이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수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삿짐은 당 건물의 특성상 승강기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삿짐 차량 일부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수인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탑, 지붕 및 건물 외벽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열 판넬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각 시설물들의 위치, 개소, 사양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당해 건축물 관리자는 기계실, 전기실, MDF 등 건축물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 설치된 실을 접근하기 위해 동선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소방안전계획은 소방심의 및 소방기관의 현장실사 등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소방차의 진입과 회전, 정차 등을 위한 조경배치와 동선의 형태, 규모, 재질 및 기타계획이 입주자의 동의없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소방 및 안전과 관련된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방안전매트 설치구간을 계획하여야 할 경우, 해당 구간은 조경식재가 불가할 수 있어 일부 저층 호실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 가능하고, 추후 소방서 협의에 따라 안전매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가스계량기, 감지기 등의 설치로 일부 가전제품의 경우 다용도실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여유공간을 필히 확인바랍니다. • 천장 속 각 종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인해 우물천장 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의 가스 입상배관은 실외에 설치되어 외부 마감에 대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물 외부 배관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발코니,다용도실,실외기실 등에 배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오피스텔) 준공 전 공사용 운행 등 시험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비상시 피난 및 대피 경로에 외부 사다리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설비	• 오피스텔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입니다. • 천장 에어컨의 유지 / 보수 /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냉, 난방 공급설비의 용량 제한으로 실내 냉방기기의 용량 증대 교체 및 증가가 불가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 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우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용량 외에 입주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입주자가 공사해야 합니다. • 단위호실 천장 내부에 상부실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 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은 정보통신 1등급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욕실내 샤워부스바닥과 욕조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 제어용 온도조절기가 없어 해당구간의 온도조절기를 통해 작동하여야 합니다. • 호실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필터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호실 주방 및 욕실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호실에 냄새가 전달되거나 인접 호실에서 냄새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욕실 환기팬의 위치 및 사양은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레인지후드 옆 가스장에는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이로인해 내부 가구의 공간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화장실 물내림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양변기 물탱크 주변에 자연현상으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우수), 선홈통 박스 및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실외기실에는 환기용 덕트, 에어컨 배관, 배수수직관 등이 위치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각종 배관(급수,급탕,난방,오배수 등)으로부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에 따라 거실에는 배연창이 설치되며, 인허가 관련기관 협의 등에 따라 배연창의 크기, 위치, 세부계획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연창 상부 창틀에는 배연창개방장치가 설치되며 그로 인해 창호 프레임에 브라켓 설치 및 설치를 위한 타공이 발생할 수 있고 미관저해, 창호개폐 및 환기가 불가하거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배연창(배연창개방장치 포함)의 크기, 위치, 분할 및 개폐기의 사양, 디자인, 버튼위치 등 세부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규에 따라 배연창(배연창개방장치 포함)은 향후 입주 후 개별적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파손 등의 경우 관련 법규 및 인허가사항에 적합하게 보수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의 가스 입상배관은 실외에 설치되어 외부 마감에 대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물 외부 배관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발코니,다용도실,실외기실 등에 배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대지에 매립이 불가능한 경우 지하주차장을 통과하여 호실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양변기, 세면기, 수전, 휴지걸이, 수건걸이, 슬라이드바의 위치와 천정점검구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 호실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측 호실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배수구 미사용시 (장기간 미사용시 악취 방지를 위한 봉수에 물이 증발) 배수관 내부의 악취가 전달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구에 봉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배수구에 물을 흘려 봉수를 유지해야함 • 호실 전열교환기는 설치위치(실외기실, 하향식 피난구실, 혹은 다용도실 상부)에 필터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별 외부 가스배관 입상에 4층까지 방범용 배관카바가 설치됩니다.
단위호실 및 마감재	• 본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되었고, 단위호실 내 일부 간벽은 경량벽체 및 조적 벽체로 시공되어 일반 벽식 구조와 비교하여 소음 및 충격음 전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기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석재, 바닥재 등 자재의 특성상 균등한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하자 사항이 아님을 유념하시고 차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기구, 각 실 붙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자재의 제반 홍보물의 면적 및 세부내용은 인·허가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등 형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 노출면에는 강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후면/천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나 하부에는 페인트로 마감 됩니다. • 외부창호, 프레임 사이즈, 손잡이, 유리 색상, 두께 및 제품 사양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호실별, 층별, 위치별로 각종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위호실별 외부창호는 기능성 및 시공성(구조계산, 단열 시뮬레이션, 가시도, 사용성)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창호 프레임의 구조 형상, 규격 및 위치, 색상, 개폐창호의 위치 및 방향, 방충망의 유형 및 위치, 유리의 사양 및 색상, 프레임과 유리창의 체결 방법, 하드웨어, 난간의 설치위치 및 고정방법 등) • 일부 단위호실의 외부창호에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소방관 진입창 표시가 됩니다.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내부 벽체는 일부 경량벽체 및 조적 벽체로 시공 되어지며,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용 전용 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생활환경에 따라 창호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의 관리상의 문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한 문틀의 폭 변경, 창호 및 각종 도어류의 재질, 개폐 방향, 디자인,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현관 등 단차 부위 시공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하오니,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창호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단위호실의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공되지 않습니다. • 단위호실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커텐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천정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되며 일부 단위호실 화장실에는 급배수 설치를 위하여 추가로 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갤러리(루바)창의 상부에 설비배관, 주름관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커텐박스는 본시공시 설비 배관, 덕트 등으로 인하여 형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단위호실에는 호실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설치되고, 호실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의 위치, 크기 및 디자인, 배치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다른 공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주방 벽,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욕실장 및 샤워부스의 디자인 및 디테일은 본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적용되는 대형타일 및 석재 등의 마감재는 재료적 특성상 인접타일과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차이, 자연무늬(베인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제공되는 품목(주방가구, 냉장고장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등에 따라 평면 및 마감재 적용 부위가 상이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위치 및 콘센트 위치는 실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상판, 벽 타일]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외부 환기캡(후드캡)으로 인해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가스레인지 좌,우측 벽을따라 가구 상부장 뒤쪽으로 은폐되어 설치되거나, 벽체 매립 또는 노출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 내 일부 발코니 (다용도실)에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배관이 노출되며, 실외기실에는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단위호실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호실별 전용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 됩니다. • 입주 후 호실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 벽체 및 바닥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난방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호실 내 급수, 가스,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호실 내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스, 전기, 하이브리드 쿡탑 설치 옵션에 따라 가스, 전기 차단기가 옵션별 상이하게 설치되며, 추가 설치 및 변경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현관에 소방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만,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호실은 현관에 소방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때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면적 표시 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법 = 형별 면적(㎡) × 0.3025) • 2014.12.0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으로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 방식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 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이에 따라 오피스텔 전용면적을 표기하였고,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고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 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현휘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이후 주소 변경[전자주소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부지 내 입주자 공동시설 공간의 시설물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 수인하고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는 "일반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5-266호, 2015.04.30.)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승인 후 불법구조 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실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허가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오피스텔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오피스텔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92025-104-0000800 호	**₩ 21,794,46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시행자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여야 함

※ 오피스텔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
상호	㈜종합건축사사무소가람건축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코아엔지니어링	㈜일신이앤드씨
금액	5,963,001,000	1,331,060,940	1,499,737,000	310,2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 관련 유의사항

- 분양대금은 지정된 분양대금수납계좌외의 입금에 대하여는 입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본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수입금 관리를 위해 "자금관리신탁사"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분양대금은 "자금관리신탁사"가 관리하고, 본 주택은 사업주체의 책임으로 분양계약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인바, 분양계약자는 이를 확인한다.
- 공급계약서상 시행자 및 매도인의 책임(분양대금 반환, 하자책임 등)은 사업주체에게 있고, "한국자산신탁㈜"은 분양대금의 수납 및 사업관계자의 동의에 따른 자금집행만을 담당하고, 동 분양대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는 "한국자산신탁㈜"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공급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기타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분양계약자는 분양대금 반환의무를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한국자산신탁㈜"은 부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 "한국자산신탁㈜"는 날인의 의무가 없으며 "한국자산신탁㈜"의 날인이 없어도 공급계약은 유효하다.
- "한국자산신탁㈜"는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수임자로서 분양대금 수납업무만을 담당하고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관여하지 않으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 사이에 체결된 공급계약에 관한 분쟁(분양계약 해지, 분양대금 반환 등)에 대하여 "한국자산신탁㈜"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인지하고 동의한다.

■ 분양사업자(사업주체) 및 시공사, 자금관리자, 분양대행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자금관리자	분양대행사
상 호	경안리버시티개발(주)	효성중공업(주)	한국자산신탁(주)	㈜밀리언키홀딩스
법인등록번호	134211-0225345	110111-6770154	110111-2196304	110111-6835445
주 소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29번길 14, 3층(송정동)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7, 27층 外(회현동1가, AK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카이트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03, 402호 (청담동, 솔머리빌딩)

※ 본 분양광고상 사업주체인 경안리버시티개발(주)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해 설립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및 토지소유자로서 주택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토지소유자인 경안리버시티개발(주), 효성중공업(주)이 공동사업주체로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계약자는 경안리버시티개발(주)와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분양광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분양광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 : http://해링턴스퀘어리버파크.com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 견본주택(경기도 광주시 역동 28-58번지) I ☎1551-3935

■ 본 분양광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